

교양외국어학점인정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20
제정일자	1996.06.18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1/3

1996.06.18. 제정 1998.03.01. 개정 1998.12.14. 개정 2004.12.01. 개정 2006.03.01. 개정 2016.12.01. 개정 2019.07.16. 개정 2020.09.25. 개정 2022.04.15. 개정 2022.11.24. 개정 소판부서 교무처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영어, 일본어 및 중국어 등 외국어 학습을 장려하여 외국어 구사능력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제2조(운영)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에게 소정의 학점을 부여한다.

제3조(학점인정의 범위) 각 호에 대해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.<개정 2022.11.24.>

- 1.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어학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학생
- 2. 국내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어학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학생
- 3. 교내에서 실시하는 외국어특강 프로그램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학생
- 4. 토익 Speaking 레벨5(110점이상), TOEIC(550점이상), TOEFL(PBT 450점, CBT 137점, IBT 55점), TEPS(450점) 등의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단, 해당시험 중 다수의 어학점수를 취득하였더라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.<개정 2016.12.01., 2022.11.24.>
- 5. JLPT시험에서 신N3 이상 자격을 취득하거나 JPT시험(550점 이상)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<개정 2016.12.01., 2022.11.24.>
- 6. 중국어 검정시험(新HSK)에서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학생<개정 2016.12.01>
- 7. <삭제 2016.12.01>
- **제4조(교과목명 및 학점)** ① 영어 관련 인정 교과목명은 'TOEIC(TOEFL, TEPS)특강' 또는 '영 어회화특강'으로 한다.
 - ② 일본어 관련 인정 교과목명은 '일본어특강'으로 한다.<개정 2019.07.16.>
 - ③ 중국어 관련 인정 교과목명은 '중국어특강'으로 한다.





교양외국어학점인정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20
제정일자	1996.06.18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2/3

- ④ 외국어 관련 인정학점은 이수시간 30시간당 1학점을 부여하며, 최고 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다만 제3조의 제4, 5, 6, 7호에 해당하는 자는 1학점을 부여한다.
- ⑤ <삭제 2016.12.01>
- ⑥ 학과장의 요청시 위 각 항의 교과목명 이외의 별도 과목명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5조(이수구분) 이수구분은 교양으로 한다.

제6조(삭제 2004. 12. 1)

제7조(평가담당교수) 평가담당교수는 해당 외국어학과의 학과장으로 한다.

제8조(증명서 제출)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 서 또는 성적표를 평가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성적평가) 교양외국어의 성적은 학점인정(Pass : P)과 불인정(Non-Pass : N)으로 구분하여 학점인정자에 한해서 수강신청 자격을 부여한다.

제10조(수강신청 및 학점부여) 전 조에 의하여 수강신청 자격을 부여받은 학생은 재학 중 본인이 선택하는 학기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소정의 학점을 부여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

교양외국어학점인정 규정

문서번호	BSKS-1-1-20
제정일자	1996.06.18
최종개정일자	2022.11.24.
페이지 수	3/3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『교무처』를 『교학처』 로 『산학처』를 『산학·취업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